1. 개정이유

'사업자등록증'의 용어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며, 요양기관의 현황 신고 서식상 '임종실'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자등록증' 용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나. 「의료법」 제36조 개정(법률 제19818호, '23.10.31 공포, '24.8.1 시행)으로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대한 임종실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 신고 서식에 '임종실' 항목 마련(안 별지 제14호 서식 및 제17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3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그 사본”을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2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란 중 “1.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1.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제15호서식 뒤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란 중 “1. 사업자등록증”을 “1.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및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기관 현황신고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4호서식 및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법 제43조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하거나 신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00. 00.>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본 서식의 [일반현황](①,②,⑤), [시설현황], [진료과목현황]의 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시·도지사가 허가·등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나머지 [일반현황](①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③,④), [시설현황]의 세부 사항, [업무분야별 운영현황], [인원현황], [의료인 등 인원 현황]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합니다. (1쪽/3쪽)

지역코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요양기관 기호		※ 표시과목	

[일 반 현 황]

①요양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명칭	개설 신고(허가)일	개설신고(허가)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종류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 ]일반 [ ]정신병원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중 해당 구분에 ∨표 합니다)		
②개설자(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전문의 자격종류	전문의 자격번호	연락처 (집) (휴대전화)
	주소		전자우편주소
③요양급여비용 수령 금융기관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 ④청구S/W업체명

⑤설립 구분	01 국립	02공립				03법인											04 개인	05 군병원	06 기타
		[ ] 시도립	[ ] 시군구립	[ ] 지방의료원	[ ] 기타공립	[ ] 학교법인	[ ] 특수법인	[ ] 종교법인	[ ] 사회복지법인	[ ] 사단법인	[ ] 재단법인	[ ] 회사법인	[ ] 의료법인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				

1. 종류란에는 요양기관의 해당 종류기호를 적습니다.
   [종류기호] 01종합병원 02병원 03치과병원 04한방병원 05요양병원 06정신병원 07의원 08치과의원 09한의원 10조산원 11보건소 12보건의료원 13보건지소 14보건진료소
2. 설립 구분란에는 해당 구분코드 또는 [ ]에 ∨표 합니다).
3.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등급, 입원환자 식대 및 중환자실 관련 현황통보서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제출합니다.

[시 설 현 황]

입원병실 — 일반입원실 (a)

구분		계 (a+b+c+d+e+f)	상급 1인	상급 2인	상급 3인	상급 호스피스 1인	일반 1인	일반 2인	일반 3인	일반 4인	일반 5인	일반 6인 이상	호스피스 1인	호스피스 2인	호스피스 3인	호스피스 4인	외국인 전용
실제 기준	병실																
	병상																
입원료 기준	병실																
	병상																

정신과 입원실 (b)

구분		개방 상급 1인	개방 상급 2인	개방 상급 3인	개방 일반 1인	개방 일반 2인	개방 일반 3인	개방 일반 4인	개방 일반 5인	개방 일반 6인 이상	폐쇄 상급 1인	폐쇄 상급 2인	폐쇄 상급 3인	폐쇄 일반 1인	폐쇄 일반 2인	폐쇄 일반 3인	폐쇄 일반 4인	폐쇄 일반 5인	폐쇄 일반 6인 이상
실제 기준	병실																		
	병상																		
입원료 기준	병실																		
	병상																		

구분	중환자실 (c) 성인 일반병상	성인 격리병상 음압	성인 격리병상 비음압	소아 일반병상	소아 격리병상 음압	소아 격리병상 비음압	신생아 일반병상	신생아 격리병상 음압	신생아 격리병상 비음압	격리병실 (d) 음압공조 1인	음압공조 다인	음압기계 1인	음압기계 2인	음압기계 다인	비음압 1인	비음압 2인	비음압 다인	무균치료실 (e) 1인	무균치료실 (e) 다인	임종실 (f)	의료법 신고(허가) 총병상	
실제(입원료) 기준 병실																					병실	
실제(입원료) 기준 병상																					병상	

특수진료실 등

구분	계	분만실	신생아실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일반병상	응급실 격리병상 음압	응급실 격리병상 비음압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강내치료실	방사선옥소	낮병동	조혈모세포처치실	혈액은행	임상검사실	모자동실	조제실	탕전실
병실														유 [ ]	유 [ ]	유 [ ]	유 [ ]	유 [ ]	유(내[ ],외[ ])
병상														무 [ ]	무 [ ]	무 [ ]	무 [ ]	무 [ ]	무(원외공동이용[ ], 무[ ])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입원병실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병상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하는 예비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3. 격리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및 화상 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4. 입원병실의 병실·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5. 실제기준 상급병실·병상수는 입원료 기준 상급병실·병상수와 동일하게 기록하고, 실제기준 일반병실·병상수는 입원료 기준 일반병실·병상수를 물리적인 인실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6. 입원료기준 병실·병상의 인실 구분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산정하는 입원료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6인이상 병실을 운영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업무분야별 운영현황]

1.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 [ ] 2. 응급의료기관 [ ] 3. 공동이용기관 [ ] 4. 개방병원[ ] 5. 가정간호 실시기관 [ ] 6. 인공달팽이관이식기관(인공와우이식기관)[ ]
7.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및 협약기관(장기요양기관 제외) [ ] 8. 장기이식 의료기관 [ ] 9.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 ]
10. 호스피스전문기관 [ ]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로 구분함. 첨부서류는 아래의 1～10번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확인증 사본 2.응급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3.공동이용계약서 사본 4.개방병원이용계약서 사본 5.가정간호 전담부서 운영 관련 사본
6.인공달팽이관이식기관 (인공와우이식기관) 인력(시술경험자), 시설 및 장비 현황 사본 7.촉탁의 및 협약사회복지시설 계약 관련 서류 사본 8.장기이식 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9.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인증서 사본 10.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사본

[진 료 과 목 현 황] 총_____과목

코드	진료과목	전문의	레지던트	계	코드	진료과목	전문의	레지던트	계	코드	진료과목	전문의	레지던트	계	코드	진료과목	전문의	레지던트	계	코드	진료과목	전문의	전문수련의	계
01	내 과	ⓐ ⓑ		명	11	소아청소년과	ⓐ ⓑ ⓒ		명	21	재활의학과			명	50	구강악안면외과			명	61	통합치의학과			명
02	신 경 과			명	12	안 과			명	22	핵의학과			명	51	치과보철과			명	80	한방내과			명
03	정신건강의학과		ⓐ ⓑ	명	13	이비인후과			명	23	가정의학과			명	52	치과교정과			명	81	한방부인과			명
04	외 과			명	14	피부과			명	24	응급의학과			명	53	소아치과			명	82	한방소아과			명
05	정형외과			명	15	비뇨의학과			명	25	직업환경의학과			명	54	치주과			명	83	한방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			명
06	신경외과			명	16	영상의학과			명	26	예방의학과			명	55	치과보존과			명	84	한방신경정신과		ⓐ ⓑ	명
07	흉부외과			명	17	방사선종양학과			명						56	구강내과			명	85	침구과			명
08	성형외과			명	18	병리과			명						57	영상치의학과			명	86	한방재활의학과			명
09	마취통증의학과			명	19	진단검사의학과			명						58	구강병리과			명	87	사상체질과			
10	산부인과			명	20	결핵과			명						59	예방치과			명					

1. 진료과목 표기는 해당 과목 코드에 ○표 하고, 진료과목별 인원 현황은 전문의, 레지던트 및 전문수련의 자격 종류에 따른 인원만 기록합니다.
2. 내과전문의는 감염내과전문의를 구분(ⓐ총인원, ⓑ감염내과전문의)하여 기록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감염소아과, 내분비 전공으로 구분(ⓐ총인원, ⓑ감염소아청소년과전문의, ⓒ내분비학전공)하여 기록,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의 계는 ⓑ와 ⓒ를 제외하고 기록합니다.
3.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는 1-4년차로 구분 (ⓐ1-2년차, ⓑ3-4년차)하여 기록하고,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수련의는 1-3년차로 구분(ⓐ1-2년차, ⓑ3년차)하여 기록합니다.

[인 원 현 황] 총_____명 (정신건강전문요원 제외)

01	의사	계	명	04	조산사			명	13	치과위생사	명						
		일반의	명	05	간호사	계		명	14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명						
		인턴	명			간호사		명	15	동위원소취급자(일반)	명						
		레지던트	명			가정전문간호사		명	16	동위원소취급자(특수)	명						
		전문의	명			보건전문간호사		명	17	방사선취급감독자	명						
		(조혈모세포 이식 담당 의사)	명			마취전문간호사		명	18	영양사	명						
02	치과의사	계	명			정신전문간호사		명	19	조리사	명						
		일반의	명	06	간호조무사			명	20	사회복지사	명						
		인턴	명	07	약사	계		명	21	조혈모세포이식담당자	명						
		레지던트	명			약사		명	22	안경사	명						
		전문의	명			한약사		명	23	기타종사자	명						
03	한의사	계	명	08	임상병리사			명									
		일반의	명	09	방사선사			명	25	정신건강전문요원	계	명					
		인턴	명	10	물리치료사			명			정신건강간호사	명					
		레지던트	명	11	작업치료사			명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명					
		전문의	명	12	치과기공사			명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명					

의료인 등 인원 현황 총_____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근무형태	근무기간	개설자 구분	비고

1. 현황에 적는 인력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한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동위원소 취급자(일반, 특수)로 한정합니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를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2.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비상근, 기타를 구분하여 기록하며 비상근, 기타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또는 근무요일)를 기록합니다.
3. 인턴, 레지던트는 비고란에 "인턴", "레지던트"로 기록하고, 한방의 경우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는 비고란에 "일반", "전문"으로 기록(자격종류란에 "레지던트" 또는 "전문수련의"의 전공과목 기록)합니다.
4. "비고" 에는 동통재활분야 등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교육 이수"라고 기록합니다.
5. 개설자는 개설자 구분란에 "주개설자", "공동개설자"를 선택하여 기록합니다.

신고인 제출서류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제1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시·도지사가 허가·등록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2. 요양기관의 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면허증, 자격증, 교육이수증, 세부 전문의 자격증. 다만, 신규발급자의 경우에만 제출하되,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세부 전문의 자격증과 동위원소 취급자(일반, 특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의 면허증은 모두 제출합니다] 3.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신고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 00. 00.>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 3쪽의 첨부서류를 참고하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1쪽/3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기호	대표전화번호
	소재지		
개설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성명	연락처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일
[1] 명칭 또는 개설자(대표자)			
[2]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진료과목			
[4] 시설현황(특수진료실 등)			
[5]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인력			
[6] 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			
[7] 사업자등록번호			
[8] 운영 현황(의약분업, 응급, 공동이용, 개방병원, 가정간호, 인공달팽이관이식(인공와우이식), 촉탁의 등)			
[9] 기타(교육이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본 서식의 [1]~[4]의 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시·도지사가 허가·등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4]의 세부사항 및 [5]~[9]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합니다.

[업무분야별 운영현황]

1.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 [ ] 2. 응급의료기관 [ ] 3. 공동이용기관 [ ] 4. 개방병원 [ ] 5. 가정간호 실시 기관 [ ] 6. 인공달팽이관이식기관(인공와우이식기관) [ ] 7.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및 협약기관(장기요양기관 제외)[ ] 8. 장기이식의료기관 [ ] 9.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 ] 10. 호스피스전문기관 [ ]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로 구분합니다.
▣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2·8·10번: 지정서 사본 1부, 3·4·7번: 계약관련 서류(계약서) 사본 1부 5·6번: 운영 현황(인력, 시설, 장비 등) 관련 사본 1부, 9번: 인증서 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기관 현황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시설 변경사항] (변경일: . . .)

입원 병실

구분		계 (a+b+c+d+e+f)	일반입원실(a) 상급 1인	상급 2인	상급 3인	상급 호스피스 1인	일반 1인	일반 2인	일반 3인	일반 4인	일반 5인	일반 6인 이상	일반 호스피스 1인	일반 호스피스 2인	일반 호스피스 3인	일반 호스피스 4인	외국인 전용
실제 기준	병실																
	병상																
입원료 기준	병실																
	병상																

구분		정신과 입원실(b) 개방 상급 1인	개방 상급 2인	개방 상급 3인	개방 일반 1인	개방 일반 2인	개방 일반 3인	개방 일반 4인	개방 일반 5인	개방 일반 6인 이상	폐쇄 상급 1인	폐쇄 상급 2인	폐쇄 상급 3인	폐쇄 일반 1인	폐쇄 일반 2인	폐쇄 일반 3인	폐쇄 일반 4인	폐쇄 일반 5인	폐쇄 일반 6인 이상
실제 기준	병실																		
	병상																		
입원료 기준	병실																		
	병상																		

구분		중환자실(c) 성인 일반병상	성인 격리병상 음압	성인 격리병상 비음압	소아 일반병상	소아 격리병상 음압	소아 격리병상 비음압	신생아 일반병상	신생아 격리병상 음압	신생아 격리병상 비음압	격리병실(d) 음압공조 1인	음압공조 다인	음압기계 1인	음압기계 2인	음압기계 다인	비음압 1인	비음압 2인	비음압 다인	무균치료실 (e) 1인	무균치료실 (e) 다인	임종실 (f)	의료법 신고(허가) 총병상	
실제 기준	병실																					병실	
입원료 기준	병상																					병상	

특수 진료실 등

구분		계	분만실	산후조리실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일반병상	응급실 격리병상 음압	응급실 격리병상 비음압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강내치료실	방사선 옥소	낮 병동	조혈모세포 처치실	혈액은행	임상검사실	모자동실	조제실	탕전실
병실															유 [ ] 무 [ ]	유 [ ] 무 [ ]	유 [ ] 무 [ ]	유 [ ] 무 [ ]	유 [ ] 무 [ ]	유(내[ ],외[ ])
병상																				무(원외공동이용[ ], 무[ ])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2. 입원병실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병상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하는 예비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3. 격리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화상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4. 입원병실의 병실·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5. 실제기준 상급병실·병상수는 입원료 기준 상급병실·병상수와 동일하게 기록하고, 실제기준 일반병실·병상수는 입원료 기준 일반병실·병상수를 물리적인 인실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6. 입원료기준 병실·병상의 인실 구분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산정하는 입원료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6인 이상 병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제출합니다.

휴업·재개업일		[ ] 휴업기간: -	[ ] 재개업일:
폐 업	폐업일		
	폐업 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휴폐업사유		※ [ ]에 √표시합니다. 01. 대표자 사망[ ] 02. 고령(건강상)[ ] 03. 학업목적[ ] 04. 경영상[ ] 05. 취업[ ] 06. 무기한 휴업[ ] 07. 소재지 이전[ ] 08. 종류변경(의원↔병원)[ ] 09. 면허취소[ ] 10. 허가취소, 등록취소, 폐쇄[ ] 11. 기타 [ ]	

[의료인 등 인력 변경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근무형태	근무기간	개설자 구분	비고

1.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한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의 인력 변경사항을 기록합니다. 이 경우 요양병원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의 변경사항을 포함합니다.
2.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비상근, 기타를 구분하여 기록하며 비상근 및 기타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또는 근무요일)을 기록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근무형태란에 "대진"으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해당 개설자(부재자)의 성명과 부재기간을 기재합니다.
4. 인턴과 레지던트는 비고란에 "인턴", "레지던트"로 기록하고, 한방의 경우 일반수련의와 전문수련의는 비고란에 "일반", "전문"으로 기록(자격종류란에 "레지던트" 또는 "전문수련의"의 전공과목 기록)합니다.
5. 내과전문의는 비고란에 감염내과전문의를 기록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비고란에 감염소아과, 내분비 전공을 기록합니다.
6. 개설자는 개설자 구분란에 "주개설자", "공동개설자"를 선택하여 기록합니다.

변경사항별 첨부서류

변경사항		첨부서류
(1) 명칭 또는 법인인 경우의 개설자(대표자)		○ 없음
(2) 소재지	개설허가(신고·등록) 관할구역 외 이전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달리하여 이전하지 않은 경우)	○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개설허가(신고·등록) 관할구역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달리하여 이전한 경우 (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함)	
(3) 의료기관 종류 또는 설립형태 (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함)		
(4) 단독개설 또는 공동(집단)개설시 개설자(대표자) (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함)		
(5) 법인개원인 경우의 법인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일한 법인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 (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함)		
(6)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 면허증, 자격증, 세부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다만, 신규로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사람만 제출하되, 사회복지사, 세부전문의 자격증과 동위원소취급자(일반·특수)의 면허증은 모두 제출함 ○ 보바스, TPI 교육이수증 등 사본 1부
(7) 병실수 및 병상수		○ 없음
(8)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일		○ 없음
(9) 요양급여비용 수령 계좌번호		○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원본) ○ 통장 사본 1부 *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함
(10)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변경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의약분업 예외지역 요양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없음
(12) 응급의료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응급의료기관 변경 또는 지정 취소 관련서류 사본 1부
(13) 인력·시설·장비 공동이용기관 변경 또는 취소		○ 공동이용계약서 또는 공동이용 해지 관련서류 사본 1부
(14) 참여 병원·의원 변경 또는 취소		○ 개방병원이용계약서 또는 개방병원이용 해지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15) 인공달팽이관이식(인공와우이식) 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인공달팽이관이식(인공와우이식) 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16)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17)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및 협약기관(장기요양기관 제외) 변경 또는 취소		○ 촉탁의 및 협약사회복지시설 계약 또는 해지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18) 장기이식 의료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장기이식의료기관 변경 또는 지정 취소 관련 서류 사본 1부
(19)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인증서 사본 1부
(20)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 또는 취소		○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 또는 취소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21) 진료과목		○ 없음
(22) 그 밖의 사항		○ 필요 시 제출서류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개설허가증) 사본 1부 : (1), (2), (3), (4), (5), (6), (7), (21)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1) -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사실 확인서 사본 1부: (8) - 공동(집단)개원의 개설자 변경인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 1부: (4) - 의약분업 예외지역 확인서(지정서) 또는 취소 예정 통보문서 사본 1부: (11)

담당 직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사업자등록증명(신고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장의 적용·변경·탈퇴 신고)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에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장의 적용·변경·탈퇴 신고) ① ----------. -- ----------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② ----------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신고인이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